##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동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43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0.

발 의 자:고동진・박충권・배준영

백종헌 • 안철수 • 김소희

주호영 · 조지연 · 강대식

박정훈 · 김정재 · 박성훈

김형동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해 한국 체류 외국인은 250만명을 돌파했고 외국인 취업자수는 92만명을 넘어섰음. 하지만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명 수준으로 10년째 정체된 상태임. 외국인 전문인력은 기술·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음. 특히 저출생·고령화로 생산인구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만큼 전문외국인력 유치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.

이에 전문적인 지식·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하고 정주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(안제16조).

법률 제 호

##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 중 "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"를 "마련하여야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	제16조(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
선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	선)
전문적인 지식・기술 또는 기	
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	
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	
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	
제도와 시책을 <u>마련하기 위하</u>	<u>마련하여야</u> -
여 노력하여야 한다.	